

국토교통부훈령 제2023-1679호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국토교통부 (운영지원과)
연 월 일	2023. 11. .

1. 개정이유

업무역량이 우수한 직원을 조기 발탁 및 육성하고 조직 내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 중인 특별승진 제도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, 일부 과장급 개방형 직위에 대한 직무특수성 및 내부인력 활용 필요성 증가 등 사유로 동 직위를 자율직위로 조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승진 시행시기 자율화(안 제17조)

나. 과장급 개방형 직위 조정(안 제72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회 예정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부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있으며, 5급 및 6급 특별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심사와 함께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”를 “있다”로 한다.

제72조제2항 중 “기획과장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”을 “기획과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특별승진) ① 4급 이하 공무원의 경우에는 「공무원임용령」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고 창의력 및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을 연간 계급별 승진예정 인원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으며, 5급 및 6급 특별승진의 경우 일반승진심사와 함께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생략)</p> <p>②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시활력지원과장, 공항운영과장,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장, 국토교통인재개발원 <u>기획과장</u>,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장, 광주국토관리사무소장,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7조(특별승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있다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2조(개방형 직위의 지정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획과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